

定 款

아이에스동서주식회사

目 次

第 1 章 總 則	3
第 2 章 株 式	5
第 3 章 社 債	9
第 4 章 株主總會	10
第 5 章 이사·이사회	12
第 6 章 計 算	15
附 則	16

定 款

1975. 9. 1 制定
1985. 5. 28 改正
1986. 2. 28 改正
1987. 3. 2 改正
1988. 2. 28 改正
1990. 2. 28 改正
1991. 2. 28 改正
1993. 2. 26 改正
1994. 2. 26 改正
1994. 7. 1 改正
1995. 2. 28 改正
1996. 2. 29 改正
1997. 2. 28 改正
1998. 3. 28 改正
1999. 2. 27 改正
2000. 3. 17 改正
2001. 3. 9 改正
2004. 11. 4 改正
2005. 3. 5 改正
2008. 4. 25. 改正
2008. 6. 13. 改正
2009. 3. 20. 改正
2010. 3. 26. 改正
2015. 3. 20. 改正
2016. 3. 18. 改正
2018. 3. 30. 改正
2019. 3. 29. 改正
2021. 3. 26. 개정
2022. 3. 25. 개정
2023. 3. 31. 개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商號) 이 會社는 아이에스동서주식회사라 한다.

英文으로는 IS DONGSEO CO., LTD라 表記한다. (2008. 4. 25. 일부개정)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窯業製品 製造 및 販賣業
2. 콘크리트製品 製造 및 販賣業
3. 其他 建資材 製造 및 販賣業
4. 都賣業
5. 不動産販賣 및 賃貸業
6. 輸出入業
7. 鑛山開發 生産 및 販賣業
8. 新素材 開發 生産 및 販賣業
9. 住宅事業

10. 機械 構造用 세라믹 담체 製造 및 販賣業
11. 電氣, 電子用 세라믹 담체 製造 및 販賣業
12. 서비스업(物品賣渡 確約書 發行業)
13. 重機 貸與業
14. 環境汚染防止施設業 및 同 開發製品 製造 販賣業
15. 電磁波 吸收體 關聯 施設業 및 同 製品製造 販賣業
16. 觸媒關聯製品の 製造販賣 및 關聯事業
17. 水全金具製品 製造 및 販賣業
18. 汚水, 糞尿, 畜産廢水 處理 施設業 및 同關聯 製品 製造 販賣業
19. 消防 施設 工事業
20. 組立式 浴室(C.U.B.R)製品製造 및 販賣業
21. 土工事業
22. 上下水道 設備工事業
23. 철근콘크리트 工事業
24. 建築物 組立工事業
25. 보링그라우팅 工事業
26. 各種車輛 部分品の 製造 販賣業
27. 通信機械器具의 製造 販賣業
28. 인터넷關聯 情報通信 서비스業
29. 通信販賣業
30. 醫療機器 製造 및 販賣業
31. 건물 및 주택건설사업
32. 택지조성업 및 공급업
33. 임산업
34. 육영사업
35. 토목건축공사업
36. 전기공사업
37. 포장공사업
38.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39.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0. 전문소방시설공사업
41. 정보통신공사업
42.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43. 시설물 유지 공사업
44. 고철, 비철금속, 금속, 광물, 귀금속 등 관련 무역 중개 및 판매업
45. 부동산개발업
46. 철광업 및 비철금속광업
47. 기타광업 및 채석업
48. 운수관련대리서비스업 (2008. 6. 13. 31호 이하 48호 신설)

49.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제품 및 동부품의 제조 판매업 (2010. 3. 26. 49호 이하 52호 신설)
50. 전자, 전기제품 및 동부품의 제조 판매업
51.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52. 가구 제조 및 판매업
53. 요업제품 및 전자제품 등 소매업 (2016.03.18. 53호 이하 56호 신설)
54. 감류/을류 무역 대리업무
55. 욕실제품 및 가전제품 제조, 판매업
56. A/S 콜센터
57.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18.03.30. 57호 이하 58호 신설)
5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9. 농,수,축산물 생산·가공·판매업 (2021.03.26. 59호 이하 64호 신설)
60. 농,수,축산물 저장보관업
61. 음·식료품 제조·가공·판매업
62. 각종 천연,가공식품 및 원료 제조·가공·판매업
63.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유통업
64. 벤처사업 발굴, 운영 및 투자 및 육성사업
65. 신재생에너지 생산, 판매업 (2022.03.25. 65호 이하 69호 신설)
66. 신재생에너지 건설 및 투자업
67.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유지, 관리, 운영사업
68. 풍력발전사업
69.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화합물의 개발, 제조, 가공 및 판매업
70.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화합물의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71. 재생용 금속 가공 원료 생산업
72. 비철금속 수출 및 판매업
73. 각 사업에 관련된 업체투자 및 부대사업 일체

第 3 條 (本店의 所在地 및 支店等の 設置) ① 이 會社는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 이 會社는 必要에 따라 理事會의 決議로 國內外 支店, 出張所, 事務所 및 現地法人을 둘 수 있다.

第 4 條 (公告方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sdongseo.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2015. 3. 20. 개정)

第 2 章 株 式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익주로 한다.
(2023. 3. 31. 개정)

第 6 條 (壹株의 金額) 이 會社가 發行하는 株式 壹株의 金額은 五百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023. 3. 31. 개정)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023. 3. 31. 개정)

③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한다. (2023. 3. 31. 개정)

제 7 조의 2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2023. 3. 31. 개정)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額面金額을 基準으로 年 1% 以上으로 하고 發行時에 理事會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2023. 3. 31. 일부개정)

③ 普通株式의 配當率이 優先株式의 配當率을 超過할 境遇에는 그 超過分에 대하여 普通株式과 同一한 比率로 參加시켜 配當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事業年度에 있어서 所定の 配當을 하지 못한 境遇에는 累積된 未配當分을 다음 事業年度의 配當時에 優先하여 配當한다. (2023. 3. 31. 일부개정)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23. 3. 31. 개정)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23. 3. 31. 개정)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2021. 3. 26. 개정, 2023. 3. 31. 개정)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2023. 3. 31. 개정)

1. (2023. 3. 31. 삭제)
2. (2023. 3. 31. 삭제)
3. (2023. 3. 31. 삭제)
4. (2023. 3. 31. 삭제)
5. (2023. 3. 31. 삭제)
6. (2023. 3. 31. 삭제)

제 7 조의 3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2023. 3. 31. 신설)

②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7조의2 제2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3. 3. 31. 신설)

-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3. 3. 31. 신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2023. 3. 31. 신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 가. 회사의 재무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나. 회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다. 기타 이사회에서 전환을 결의한 경우

- ⑤ 제3항 제2호의 전환청구기간 또는 제4항 제2호의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2023. 3. 31. 신설)

제 7 조의 4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2023. 3. 31. 신설)

- ②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7조의2 제2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3. 3. 31. 신설)

-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2023. 3. 31. 신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3. 3. 31. 신설)

1.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2.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주주가 본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준용한다. 다만 이때,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주식의 취득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2023. 3. 31. 신설)

제 8 조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19. 3. 29. 개정)

제 9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2009. 3. 20. 단서 삭제, 2023. 3. 31. 개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23. 3. 31. 개정)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23. 3. 31. 개정)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23. 3. 31. 개정)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2023. 3. 31. 개정)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09. 3. 20. 개정, 2023. 3. 31. 개정)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

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09. 3. 20. 일부삭제, 2023. 3. 31. 개정)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09. 3. 20. 일부개정, 2023. 3. 31. 개정)
4.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09. 3. 20. 일부개정 및 삭제, 2023. 3. 31. 개정)
5. (2023. 3. 31. 삭제)
6. (2023. 3. 31. 삭제)
7. (2023. 3. 31. 삭제)
8. (2009. 3. 20. 삭제)
- ③ 제①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2009. 3. 20. 본항 신설, 2023. 3. 31. 개정)
- ④ 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09. 3. 20. 본항 신설, 2023. 3. 31. 개정)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23. 3. 31. 본항 신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23. 3. 31. 본항 신설)
- ⑦ 회사는 제①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023. 3. 31. 본항 신설)

第 9 條의 2 (一般公募增資) ① (2009. 3. 20. 삭제)

② (2009. 3. 20. 삭제)

제 9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會社는 會社의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와 같다)에게 發行株式 總數의 100分の 15以內的 範圍에서 株式買受選擇權을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依하여 附與할 수 있다. 다만 發行株式의 100의 10의 範圍內 에서는 理事會의 決議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을 附與할 수 있다.

(2009. 3. 20. 일부개정, 일부삭제, 2023. 3. 31. 일부개정)

② 株式買受選擇權을 附與받을 者는 會社의 設立, 經營과 技術革新 等に 寄與하거나 寄

與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009. 3. 20. 일부개정)

1. (2009. 3. 20. 삭제)
2. (2009. 3. 20. 삭제)
3. (2009. 3. 20. 삭제)

③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로 交付할 株式(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格과 時價와의 差額을 現金 또는 自己株式으로 交付하는 境遇에는 그 差額의 算定基準이 되는 株式을 말한 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定한다. (2009. 3. 20. 일부개정)

④ 株式買受選擇權을 一時에 在職하는 任員 또는 職員 全員에게 附與할 수 없고, 任員 또는 職員의 1인에 대하여 附與하는 株式買受選擇權은 發行株式總數의 100分の 10을 超過할 수 없다.

⑤ 株式買受選擇權을 行使할 株式의 1株當 買受價格은 다음 各號의 價格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株式買受選擇權을 附與한 後 그 行使價格을 調定하는 境遇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株式을 發行하여 交付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目的 價格중 높은 金額
가. 株式買受選擇權의 附與日을 基準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2009. 3. 20. 일부개정)

나. 該當株式의 券面額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2009. 3. 20. 개정)

⑥ 株式買受選擇權은 이를 附與하는 株主總會 決議日로부터 3年이 經過한 날로부터 5年 以內에 行使할 수 있다. 다만,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期間 滿了日을 該當 任職員의 退任 또는 退職日로 定한 境遇 當該 任職員이 本人의 歸責事由가 아닌 事由로 退任 또는 退職한 때에는 그날부터 3月 以上의 行使期間을 追加로 附與하여야 한다.

⑦ 株式買受選擇權을 附與받은 者는 第1項의 決議日로부터 2年 以上 在任 또는 在職하여야 行使할 수 있다. 다만, 株式買受選擇權을 附與받은 者가 第1項의 決議日로부터 2年內 死亡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退任 또는 退職한 境遇에는 그 行使期間 동안 株式買受 選擇權을 行使할 수 있다. (2023. 3. 31. 일부개정)

⑧ (2021. 3. 26. 삭제)

⑨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理事會 決議로 株式買受選擇權의 附與를 取消할 수 있다

1. 當該 任員 또는 職員이 株式買受選擇權을 附與받은 後 任意로 退任하거나 退職한 境遇
2. 當該 任員 또는 職員이 故意 또는 過失로 會社에 重大한 損害를 招來하게 한 境遇
3. 其他 株式買受選擇權 附與契約에서 定한 取消事由가 發生한 境遇

제 10 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2021. 3. 26. 개정)

제 11 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 이 會社는 株式의 名義改書 代理人을 둔다.

- ② 名義改書 代理人 및 그 事務取扱場所와 代行業務의 範圍는 理事會의 決議로 定하고 이를 公告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複本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事務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2019. 03. 29. 개정)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2021. 3. 26.개정)

제 12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021. 3. 26. 개정)

第 13 條 (株主名簿의 閉鎖 및 基準日) ① 이 會社는 每年 1月 1日부터 1月 31日까지 株式의 名義改書, 質權의 登錄 또는 抹消와 信託의 表示 또는 抹消를 停止한다.

② 이 會社는 每年 12月 31日 最終의 株主名簿에 記載되어 있는 株主를 그 決算期에 관한 定期株主總會에서 權利를 行使할 株主로 한다.

③ 이 會社는 臨時株主總會의 召集, 其他 必要한 境遇 理事會의 決議로 1月을 經過하지 아니하는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權利에 관한 株主名簿의 記載變更를 停止하거나 理事會의 決議로 定한 날에 株主名簿에 記載되어 있는 株主를 그 權利를 行使할 株主로 할 수 있으며,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株主名簿의 記載變更停止와 基準日의 指定을 함께 할 수 있다. 會社는 이를 2週刊 前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 14 條 (株券의 再發行) ① 株券의 汚損, 一部 磨滅 또는 分合 등으로 因하여 新株權을 交付받고자 할 때에는 이 會社 所定の 請求書에 그 舊株券을 添附하여 名義改書 代理人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汚損 또는 一部 磨滅의 程度가 심해서 그 眞僞를 識別하기 困難할 때, 또는 株券의 喪失로 因하여 新株券의 交付를 請求하고자 할 때에는 이 會社 所定の 請求書에 除權判定의 定本 또는 謄本을 添附하여 名義改書 代理人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第①項 및 第②項에 依하여 株券의 再交付를 請求하는 者는 이 會社 所定の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 3 章 社 債

第 15 條 (社債의 發行) 이 會社는 必要한 境遇에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保證 또는 無保證 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19. 3. 29. 신설, 2021. 3. 26. 개정)

제 16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社債의 額面金額이 參仟億원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다음 各號의 境遇 理事會의 決議로 株主外的 者에게 轉換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1. 轉換社債를 一般公募方法으로 發行하는 境遇
2. 經營上 필요로 國內外 金融機關 기타法人 등에 轉換社債를 發行하는 境遇
3. 經營上 必要로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外國人 投資를 爲하여 轉換社債를 發行하는 境遇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規定에 依하여 海外에서 轉換社債를 發行하는 境遇 (2009. 3. 20. 일부개정)

② 第①項의 轉換社債에 있어서 理事會는 그 一部에 대하여만 轉換權을 賦與하는 條件으로도 이를 發行할 수 있다.

③ 轉換으로 因하여 發行하는 株式은 普通株式 또는 優先株式으로 하고 轉換價額은 株式의 額面金額 또는 그 以上の 價額으로 社債發行時 理事會가 定한다.

④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은 當該 社債의 發行日 翌日부터 그 償還期日의 直前日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期間內에서 理事會의 決議로써 그 轉換請求期間을 調整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2021. 3. 26. 개정)

제 17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社債의 額面總額이 參仟億원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다음 各號의 境遇 理事會의 決議로 株主外的 者에게 新株引受權附社債를 發行할 수 있다.

1. 新株引受權附社債를 一般公募方法으로 發行하는 境遇
2. 經營上 필요로 國內外 金融機關 기타法人 등에 新株引受權附社債를 發行하는 境遇
3. 經營上 必要로 外國人投資促進法에 依한 外國人 投資를 爲하여 新株引受權附社債를 發行하는 境遇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規定에 依하여 海外에서 新株引受權附社債를 發行하는 境遇 (2009. 3. 20. 일부개정)

② 新株引受權을 請求할 수 있는 金額은 社債의 額面總額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理事會가 定한다.

③ 新株引受權의 行使로 發行하는 株式은 普通株式 또는 優先株式으로 하고 그 發行價額은 額面金額 또는 그 以上の 價額으로 社債發行時 理事會가 定한다.

④ 新株引受權을 行使할 수 있는 期間은 當該 社債發行後 翌日부터 그 償還期日의 直前日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期間內에서 理事會의 決議로써 新株引受權의 行使期間을 調整할 수 있다.

⑤ (2021. 3. 26. 삭제)

제 18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9. 3. 29. 개정)

第 4 章 株 主 總 會

第 19 條 (召集時間) ① 이 회사의 株主總會는 定期株主總會와 臨時株主總會로 한다.

② 定期株主總會는 每事業年度 終了後 3月以內에, 臨時株主總會는 必要에 따라 理事會의 決議, 其他 法規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隨時로 이를 召集한다.

③ 株主總會에서는 미리 株主에게 通知한 會議目的事項 以外에는 決議를 하지 못한다.
단 株主 全員の 同意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 20 條 (召集權者) ① 株主總會의 召集은 法令에 따른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代表理事가 召集한다.

② 代表理事가 有故時에는 代表理事가 指名하는 理事로 하되, 指名이 없는 때에는 理事 중 1人이 그 職務를 遂行한다.

第 21 條 (召集通知 및 公告) ① 株主總會를 召集함에는 그 日時, 場所 및 會議의 目的事項을 總會日 2週間 前에 株主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2009. 3. 20. 일부개정)

② 議決權있는 發行株式 總數의 100分の 1 以下の 株式를 所有한 株主에 대한 召集通知는 2週間 前에 株主總會를 召集한다는 뜻과 會議의 目的事項을 每日經濟新聞 또는 서울經濟新聞에 2回以上 公告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運用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公告함으로써 제①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009. 3. 20. 일부개정)

③ (2009. 3. 20. 삭제)

第 22 條 (召集地) 株主總會는 本店 所在地에서 開催하되 必要에 따라 이의 隣接地域에서도 開催할 수 있다.

第 23 條 (議長) ① 株主總會의 議長은 代表理事로 한다.

② 代表理事가 有故時에는 第20條 第②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24 條 (議長の 秩序維持權) ① 株主總會의 議長은 故意로 議事進行을 妨害하기 위한 發言, 行動을 하는 등 顯著히 秩序를 紊亂하게 하는 者에 대하여 그 發言의 停止 또는 退場을 命할수 있다.

第 25 條 (株主의 議決權) 株主의 議決權은 1株마다 1個로 한다.

第 26 條 (議決權의 不統一行使) ① 2以上の 決議權을 가지고 있는 株主가 決議權을 統一하

지 아니하고 行使를 하고자 할 때에는 會日의 3日前에 會社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뜻과 理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② 會社는 株主의 決議權의 不統一行使를 拒否할 수 있다.

그러나 株主가 주식의 信託을 引受하였거나 其他 他人을 위하여 株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27 條 (議決權의 代理行使) ① 株主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그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② 第①項의 代理人은 株主總會 開始前에 그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

第 28 條 (株主總會의 決議方法) 株主總會의 決議는 法令 또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出席한 株主의 議決權의 過半數로 하되 發行株式 總數의 4分の 1以上의 數로 하여야 한다.

第 29 條 (株主總會의 議事錄) 株主總會의 議事는 그 經過의 要領과 結果를 議事錄에 記載하고 議長과 出席한 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을 하여 會社에 備置한다.

第 5 章 이사·이사회

第 30 條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회는 3인 이상 11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한다.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8. 03. 30. 개정)

第 31 條 (理事의 選任)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는 제40조2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2018. 03. 30. 개정)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0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018. 03. 30. 개정)

③ 2인 이상의 理事를 選任할 경우 株主는 그 所有株式 1株에 대하여 1個의 議決權만을 行使할 수 있으며 商法 第382條의 2를適用하지 아니한다.

第 32 條 (理事의 任期)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그러나 그 任期가 最終 決算期에 관한 定期株主總會 前에 滿了될 境遇에는 그 總會의 終結時까지 그 任期를 延長한다. (2018. 03. 30. 개정)

第 32 條 2 (理事의 解任)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른다. (2018. 03. 30. 개정)

② 이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2018. 03. 30. 개정)

1. 會社에 辭任書를 提出한 때
2. 破産宣告를 받았을 때
3.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를 받았을 때

4. 死亡時

第 33 條 (理事의 補選) ① 이사회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8. 03. 30. 개정)

② 補選에 의하여 選任된 理事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 34 條 (代表理事 等 의 選任) ① 이 會社는 理事會의 決議로 代表理事 1名以上 選任하고, 代表理事는 會社를 代表한다.

② 代表理事는 會長, 社長, 副社長, 專務理事, 常務理事 등 若干名을 選任할 수 있다.

第 35 條 (理事의 職務) ① 理事는 理事會의 構成員으로서 會社 業務執行의 意思決定에 參與하고, 理事會를 통하여 經營陣의 職務執行을 監督하는 權限을 가진다.

②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에 대하여 그 職務를 忠實히 遂行한다.

第 36 條 (理事會 의 構成과 權限) ① 理事會는 理事로 構成하고 法令과 本 定款에서 정한 事項 및 會社의 業務遂行에 관한 重要한 事項을 決議하며, 理事 및 經營陣의 職務執行을 監督한다.

② 權限의 委任, 其他 理事會의 運營에 관한 必要한 事項을 定하기 위해서 別途의 理事會 規定을 둘수 있다.

第 37 條 (議長) ① 理事會의 議長은 代表理事 또는 理事會에서 따로 정한 理事가 수행한다.

② 議長이 臨時議長을 指名하지 않고 理事會에 參席하지 아니할 境遇를 對備하여, 議長은 議長을 代身하여 議長職務를 遂行할 理事의 順序를 定한다.

③ 議長이 理事會에 參席할 수 없는 境遇에는 理事중에서 議長職務를 代行할 臨時議長을 指名하며, 議長 指名이 없을 境遇에는 本條 第②項에서 定한 順으로 理事會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 37 條 2 (議案) ① 理事會의 議案은 議長이 提案한다. 단 其他 理事가 提案하고자 할 境遇에는 그 要旨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 38 條 (經營陣의 選任과 給與) ① 會社는 理事會의 議決事項을 執行하기 위하여 經營陣을 둔다.

② 經營陣의 選任과 給與는 別途의 理事會 規定으로 定한다.

第 39 條 (理事會의 決議方法)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그 이사가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 할 수 있다. (2018. 03. 30. 개정)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2018. 03. 30. 개정)

③ 단, 外國人投資促進法에 관한 法律에 따라 外國人이 直接投資를 위해 理事會의 同意를 必要로 하는 境遇에는 在籍理事 4分の 3以上の 出席에 出席理事 3分の 2以上の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 40 條 (理事會의 議事錄)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8. 03. 30. 개정)

제40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 내에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018. 03. 30. 1호 이하 2호 신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ESG위원회 (2022. 03. 25. 3호 이하 4호 신설)
4. 경영위원회

② 理事會內 理事會는 2人 以上の 理事로 構成하며 그 組織 및 運營은 理事會의 決議로 定한다.

③ 다음 各號의 事項은 그 權限을 委員會에 委任할 수 없다.

1. 株主總會의 承認을 要하는 事項의 提案
2. 代表理事의 選任 및 解任
3. 委員會의 設置와 그 委員의 選任 및 解任

④ 委員會는 決議된 事項을 各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 이를 通知받은 各 理事는 理事會의 소집을 要求할 수 있으며, 理事會는 委員會가 決議한 事項에 대하여 다시 決議할 수 있다.

제40조의 3 (감사위원회) ① 이사회 결의로 제40조2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018. 03. 30. 신설)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18. 03. 30. 신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2022. 03. 25.신설)

第 40 條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 결의로 제40조2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018. 03. 30. 신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18. 03. 30. 신설)

제40조의 5 (ESG위원회) ① 이사회 결의로 제40조2의 규정에 따른 ESG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022. 03. 25. 신설)

② ESG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22. 03. 25. 신설)

제40조의 6 (경영위원회) ① 이사회 결의로 제40조2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022. 03. 25. 신설)

②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22. 03. 25. 신설)

第 41 條 (理事의 報酬와 退職金) ① 理事의 報酬 또는 業務上 必要한 經費는 株主總會의 決議로 한 支給限度 範圍內에서 理事會가 支給與否 및 金額을 定한다.

② 理事의 退職金은 別途로 定하는 任員 退職金 規定에 依한다.

第 41 條 2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임무 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018. 03. 30. 개정)

② 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해당 이사의 악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03. 30. 개정)

第 41 條 3 (社外理事의 資格) ① 社外理事는 經營, 經濟, 法律 또는 關聯技術 等에 관한 專門的인 知識 또는 經驗이 있거나, 社會적으로 名望이 있는 者 중에서 상법 등 關聯法 規上의 資格要件을 갖춘 者로 選任하여야 하며, 社外理事가 된 후 그 資格要件을 缺하게 되는 때에는 그 職은 喪失한다. (2009. 3. 20. 일부개정)

第 42 條 (相談役 및 顧問) ① 代表理事는 最高經營者의 推薦으로 業務上 必要에 따라 顧問 및 諮問役 등을 委囑할 수 있다.

② 最高經營者는 經營陣에 準하여 이들의 報酬 또는 業務上 必要한 經費를 定하여 支給할 수 있다.

第 6 章 計 算

第 43 條 (事業年度) 이 會社의 事業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44 條 (財務諸表의 作成·備置)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8. 03. 30. 개정)

1. 貸借對照表
2. 損益計算書
3. 損益剩餘金處分明細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② 감사위원회는 제①항의 서류를 받은날로부터 1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 03. 30. 개정)

③ 代表理事는 第①項 各號의 書類와 그 附屬明細書를 營業報告書 및 監査報告書와 함께 定期株主總會 會日의 1週間 前부터 本社에 5年間, 그 謄本을 支店, 支社, 出張所에 3年間 備置하여야 한다.

- ④ 會社は 第①項 各號의 書類에 대한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을 때에는 遲滯없이 貸借對照表와 外部監査人の 監査意見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 45 條 (利益金の 處分) 이 會社は 每事業年度 處分前利益剩餘金を 다음과 같이 處分한다.

1. 利益準備金(商法上の 利益準備金)
2. 其他의 法定積立金
3. 配當金
4. 任意積立金
5. 其他의 利益處分額

第 45 條 2 (株式의 消却) ① 이 會社は 理事會決議로 株主에게 配當할 利益으로 株式을 消却할 수 있다.

- ② 第①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을 消却하고자하는 경우 理事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決議하여야 한다.

1. 消却할 株式의 種類와 總數
2. 消却하기 위하여 取得할 株式價額의 總數
3. 株式을 取得하고자 하는 기간

- ③ 第①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을 消却할 目的으로 自己의 株式을 取得할 경우에는 다음 各 號의 基準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의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를 것 (2009. 3. 20. 개정)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取得期間과 方法에 대하여 同法 施行令이 定하는 基準에 適合하여야 한다. (2009. 3. 20. 일부개정)

2. 消却을 위하여 取得할 金額이 당해 事業年度 商法 第462條 第①項의 規定에 의한 利益配當을 할 수 있는 限度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金額이하일 것. (2009. 3. 20. 일부개정)

- ④ 第①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을 消却한 때에는 그 消却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定期株主總會에 第②項의 各 號의 事項과 株式을 消却한 뜻을 報告하여야 한다.

第 46 條 (利益配當) ① 定期의 配當은 金錢과 株式으로 할 수 있으며 中間配當의 境遇에는 金錢에 依한다.

- ② 利益의 配當을 株式으로 하는 境遇에는 株式의 額面價額으로 하며, 會社가 數種의 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各各 그와 같은 種類의 株式으로 할 수 있다.

- ③ 第①項의 配當은 每決算期末 現在의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 또는 登錄質權者에게 이를 支給한다. 단, 理事會 決議에 依하여 營業年度 중 1회에 限하여 一定한 날의 株主에게 利益을 中間配當할 수 있다.

第 47 條 (配當金 支給請求權의 消滅時效) ① 配當金의 支給請求權은 5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 ② 第①項의 時效의 完成으로 인한 配當金은 會社에 歸屬한다.
- ③ 利益配當金에 대하여는 利子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1985年 5月 28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適用範圍) 본 定款規定 以外의 事項에 대하여는 商法 또는 其他 法令을 準用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1997年 2月 28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條의 2, 第21條, 第28條, 第29條, 第31條, 第32의 2, 第36條, 第37條, 第40條, 第46條의 改正은 1996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第 1 條 (본 定款 改正의 施行) 이 定款은 1998年 3月 28日부터 施行한다.
第30條의 第①項 社外理事의 數는 1998年度에 限하여 1人만 둔다.

第 2 條 (理事의 時差任期制)

- ① 第23期 定期株主總會에서 選任된 理事는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各 그룹별로 理事數를 정한다.
- ② 第32條 第①項에도 不具하고 第23期 定期株主總會에서 選任된 理事 중 1그룹에 屬한 理事는 다음 첫 번째 定期株主總會까지, 2그룹에 屬한 理事는 두 번째 定期株主總會까지, 3그룹에 屬한 理事는 세 번째 株主總會까지 任期를 가진다.

第 3 條 (本 改正 定款 施行當時의 理事 및 監事의 身分) 본 改正 定款 施行當時에 從前의 定款에 의하여 選任된 理事와 監事 중 그 任期가 滿了되지 않은 理事와 監事는 本 改正 定款에 의하여 常勤理事와 常勤監事로 選任된 것으로 본다. 다만 任期는 從前 任期를 繼續한다.

第 4 條 (準用規定)

本 定款에 規定이 없는 事項은 商法 또는 其他 法令에 依한다.

第 5 條 (內規)

이 會社는 理事會 決議로서 業務上 必要한 細則이나 規定을 定할 수 있다.

附 則

第 1 條 (定款 改正의 施行)

이 定款 改正은 第24期 事業年度에 관한 定期株主總會에서 決議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理事의 時差任期制)

- ① 第24期 定期株主總會에서 選任된 理事는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各 그룹별로 理事數를 定한다.
- ② 第32期 第①項에도 불구하고 第24期 定期株主總會에서 選任된 理事 中 제1그룹에 屬한 理事는 다음 첫 번째 定期株主總會까지, 제2그룹에 屬한 理事는 두 번째 定期株主總會까지, 제3그룹에 屬한 理事는 세 번째 株主總會까지 任期를 가진다.

第 3 條 (준용규칙)

이 定款에 規定이 없는 事項은 商法 또는 其他 法令에 依한다.

第 4 條 (內規)

이 會社는 理事會 決議로써 業務上 必要한 細則이나 規定을 定할 수 있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 改正은 第25期 事業年度에 관한 定期株主總會에서 決議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 改正은 第26期 事業年度에 관한 定期株主總會에서 決議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施行日) 第9條의 3 및 第45條의 2는 證券去來法 공포일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2004年 11月 4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 改正은 第30期 事業年度에 관한 定期株主總會에서 決議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2008年 4月 25日부터 시행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2008年 6月 13日부터 시행한다.

附 則

第 1 條 (시행일) 이 정관은 2009年 3月 20日부터 시행한다.

附 則

第 1 條 (시행일) 이 정관은 2010年 3月 26日부터 시행한다.

附 則

第 1 條 (시행일) 이 정관은 2015年 3月 20日부터 시행한다.

附 則

第 1 條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第 1 條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8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